

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

심사대상 :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☐ 개정사유 검토

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을 해제하며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

☐ 개정 조문 검토

-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헌법·상위법령과의 모순·저촉여부 : 해당 없음
-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·상충여부 : 해당 없음
- 위임범위 이탈여부 : 해당 없음
-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: 해당 없음

☐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

- 인용조문의 법제명 변경
- 조문별 띄워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심사안 참조

2025. 6. 11.

심사자 :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 기 민